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 생산기간 폐지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 16627호, 2019.11.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골재반출계획”을 “반출로 등 골재반출계획”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① 제17조에 따라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장비 보유 유지 여부, 환경오염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 및 확인 서식은 별지 제20호 및 제21호 서식과 같다.

제17조의5(골재용 토석의 처리 절차·방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골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처리(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영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 선별·파쇄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을 통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골재 선별·파쇄업자의 골재채취능력이 공사기간 내 발생하는 토석의 수량을 처리하는데 적정한지 여부

2. 건설공사 현장과 토석을 반출하려는 현장 간의 이격 거리

별지 제18호 서식 중 “총 생산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하고, “설치(점용)기간”, “생산기간”을 삭제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 및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11. 19.>

[] 골재 선별·파쇄
[] 바다골재 선별·세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 내용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연간 생산량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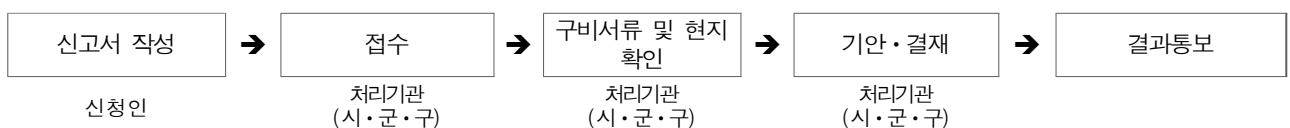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 내용	구조물(아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연간 생산량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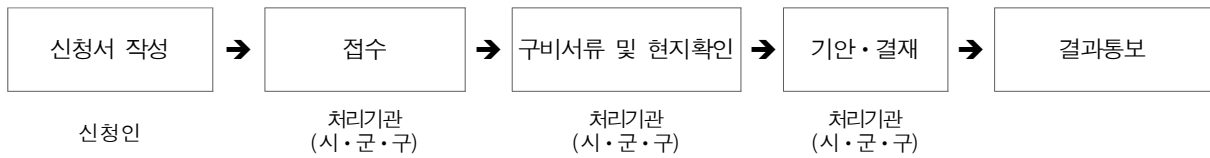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 추진현황(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관련)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내용 이행 여부			
구분	이행 여부	구분	이행 여부
시설·장비 보유		부지 보유	
연간 생산량		사업계획	
골재채취능력 평가 결과		기타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u>골재반출계획</u>,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 9. (생략) <u><신설></u>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u>반출로 등 골재반출계획</u>,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 9.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u> <u>① 제17조에 따라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장비 보유 유지 여부, 환경오염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받아야 한다.</u>

제17조의2 · 제17조의3 (생략)

<신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 및 확인 서식은 별지 제20호 및 제21호 서식과 같다.

제17조의3 · 제17조의4 (현행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과 같음)

제17조의5(골재용 토석의 처리 절차·방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골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처리(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영 제2조의2 제6호에 따른 골재 선별·파쇄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골재 선별·파쇄업자의 골재 채취능력이 공사기간 내 발생하는 토석의 수량을 처리하는데 적절한지 여부

	<u>2. 건설공사 현장과 토석을 반</u> <u>출하려는 현장 간의 이격 거</u> <u>리</u>
--	--